

운영규정 개요

I. 기본정보

기관명	효사랑재가복지센터	대표	최문상
설치일자	2023.09.25	급여종류	방문요양
소재지	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17 지상빌딩 501호		
전화	02-325-3704	팩스	02-325-3703
이용대상	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료 판명을 받은 자로 한다.		

II. 이용 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- 이용 정원: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.
- 이용자 모집 방법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기관 홈페이지, 블로그, 대상자 방문상담, 유선상담,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III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계약기간	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계약 해지	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장애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
신원인수인 권리	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함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신원인수인 의무	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
배상책임보험	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(서비스)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.

III.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
---------	---------------